

공 고

『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(재정비 1차) 결정(변경) 안』에 기 공람공고 내용 중 관계기관 협의 및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반영 등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.

2023. 11. 22.

성 남 시 장

I. 공람 안내

가. 사유 :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(재정비 1차) 결정(변경)안에 대하여 기 공람공고 내용 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재공람함

※ 도시·군관리계획 미결정 사항은 금회 공람대상 제외

나. 관계도서 : 게재생략

- 공람장소 비치(관련도면 등)

다. 공람장소

- 성남시청 도시계획과(우 13437,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, 동관 7층)

라. 공람기간

- 2023. 11. 22. ~ 2023. 12. 06.(14일)

마.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

- 제출기간 : 공람기간 동일

- 제출장소 : 성남시청 도시계획과

- 제출방법 :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또는 우편제출
(우편제출 시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)

※ 금회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만 의견을 접수합니다.

바. 기타사항

- 의견은 반드시 금회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시 도시계획과(031-729-3322, 332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II. 재공람 내용

가. 용도지구 변경

■ 취락지구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치	제한 내용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	당초 공고(안)	변경	변경후		
변경	7	궁안 1지구	자연취락지구	분당구 궁내동 324 일원	-	98,330	감) 10	98,320	경기도고시 제431호 (’97. 12. 6)	

■ 취락지구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지구명	변경내용		변경사유	비고
		당초 공고(안)	변경후		
7	궁안 1지구	98,330	98,320	· 관계기관 협의 결과 반영 - 면적 : 감) 10㎡	궁내동 254-4